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합50152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20452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합501523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송영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872,903원 및 그 중 438,396,43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476,470원에 대하여는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872,903원 및 그 중 438,396,43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120,476,47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사망 및 공동상속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1. 12. 21. D와 혼인하여 피고, E, F를 자녀로 두었다. D이 1980. 2. 13. 사망한 후 망인은 1981. 3. 24. 원고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2012. 2. 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피고, E, F가 망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상속세액 신고 및 납부

1) 원고는 2012. 8. 31. 성북세무서에 상속세액을 12,262,478,350원으로 신고하면서, 2012. 8.

31. 및 2012. 10. 31. 각 6,131,239,175원의 분납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 31. 6,131,239,170원을 납부하였고, 2012. 10. 31. 성북세무서에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12,216,388,170원으로 결정(경정)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6,085,148,990원을 납부하였다.

2) 성북세무서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망인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상속세 252,974,9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3. 3. 13. 252,974,990원을 납부하였다.

3) 성북세무서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E, F가 망인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상속세 409,508,9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3. 12. 30. 409,508,99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합계 12,878,872,140원의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재산세 등 납부

망인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는 2012년도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2018년도분까지 납부하였고, 마지막 납부일은 2018. 12. 14.이다. 각 재산세 등을 부과 받을 당시 원고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1) 피고는 원고, E, F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136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E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008호로 기여분결정 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9. 20. '원고와 E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당해 사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주택)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고, (당해 사건) 별지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재산을 피고 0.1901220지분, 원고 0.4940682지분, E 0.0558283지분, F 0.2599815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한다.'는 심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이라 한다). 다만,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망인의 주식회사 H, I은행, J은행, K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원고, 피고, E, F는 위 각 예금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았다.

3)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비율을 계산하면, 원고 0.43269291지분, 피고 0.27275466지분, E 0.06322980지분, F 0.23132262지분이다.

구분	구체적 상속분액(원) 1)서울가정법원 2015노합30136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인정된 금액	예금채권 상속액(원)	합계	구체적 상속분 지분
원고	15,151,881,926	964,466,8922)= 2,893,400,676원 × 법정상속분 3/9	16,116,348,818	0.43269291
피고	9,516,211,519	642,977,9283)= 2,893,400,676원 × 법정상속분 2/9	10,159,189,447	0.27275466
E	1,712,118,617	642,977,928	2,355,096,545	0.06322980
F	7,973,007,913	642,977,928	8,615,985,841	0.23132262
합계	34,353,219,975	2,893,400,6764)= H은행 151,423,693원 + I은행 126,745,842원 + J은행 154,077,909원 [= 152,640,949원 + 1,436,960원 (= 1,283 달러 × 2012. 2. 6. 환율 1,120원)] + K은행 2,461,153,232원 [= 2,457,537,872원 + 3,615,360원 (= 3,228 달러 × 2012. 2. 6. 환율 1,120원)]	37,246,620,651	1

4)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7브319(본심판), 320(반심판)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4. 쌍방 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18스615(본심판), 616(반심판)호로 계속된 상고심 법원은 2018. 10. 26. 쌍방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상속세 납부액에 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8628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 2/9에 해당하는 2,861,971,586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선행소송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상속세 전액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일단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세 부담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7. 12. 8. 피고의 상속세 부담액이 3,300,368,019원임을 전제로 그 중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 2,861,971,586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판결 이유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33,995,379,267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37억 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30,295,279,267원이고, 여기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14,687,689,633.5원이다. 이 금액에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총 결정세액은 12,878,872,159원인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에서 실시한 내용을 근거로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위 표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란 기재 비율과 같다)을 정하고,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상속세 부담비율 산식에 대입하면, 피고의 상속세 부담비율은 25.626%이므로, 피고의 상속세 부담액은 3,300,368,019원이 된다.

3)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2018. 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상속세 부담액 중 잔액에 관한 구상금 청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에 따르면 피고의 실제 상속세 부담비율은 25.626%이므로 피고의 상속세 부담액은 3,300,368,019원인데,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피고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2,861,971,58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38,396,4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세 납부일인 2013. 12. 31.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대납한 재산세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상속개시일인 2012. 2. 6.에 소급하여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납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120,476,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납부일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①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당시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피고의 상속세 부담비율이 25.626%이고, 상속세 부담액이 3,300,368,019원이라는 점을 판단하였고, 피고의 상속세 부담비율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인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도 미친다.

②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

1,490,000,000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에서 인정한 감정가액인

3,685,627,791원으로 계산한 오류가 있다.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이 사건 주택 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면 피고의 상속세 부담액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는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재산세 등은 피고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3. 기판력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변론종결 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행사의 경우와는 달리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그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분할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선행소송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이었고, 그에 대한 1심 결정이 있을 후 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1심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항고심 및 재항고심이 계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 결과에 따른 상속세 부담액이 아닌 피고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 부담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고,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의 확정 및 그에 따른 분할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1심 법원의 판단이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 사건 선행판결이 1심 결정에서 판단된 내용을 근거로 삼아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세 부담비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은 이 사건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공동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 법에 따라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상속세 부담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세는 부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부분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통해 확정된 상속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세 전부를 납부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공동면책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상속세 분담 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및 이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비용 기타 손해배상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피고의 상속세 분담비율은 25.626%이고, 피고의 상속세 분담액은 3,300,368,019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속세 부담액 3,300,368,019원에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지급의무를 확정 받은 2,861,971,586원을 공제한 나머지 438,396,43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면책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종 면책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세 분담액 계산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행판결은 각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상속세 분담비율 및 상속세 분담액을 산출하였고, 그 인정 사실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또한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 판결은 상속세 분담비율 및 상속세부담부분 산정에 있어 관할 세무서에서 원고에게 통지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계산의 오류가 없다. 피고는 계산 오류의 근거로 이 사건 선행판결문 4면에서 실시한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액이 이 사건 주택의

신고가액(공시가격)이 아닌 감정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계산의 오류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은 구체적 상속분까지도 시가가 아닌 상속세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나. 재산세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12. 2. 6.에 소급하여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때로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2.년부터 2018.까지 재산세 등을 대신하여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납부액 상당의 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120,476,4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세금 최종납부일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를 청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 즉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법정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476,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말미암아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서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와는 무관하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15조 단서),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재산의 소유자임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58,872,903원(=438,396,433원+120,476,470원) 및 그 중 구상금 438,396,433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 120,476,4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기각 부분이 근소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황순현 판사 최윤정 판사 고소영

1)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136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인정된 금액

2)= 2,893,400,676원 × 법정상속분 3/9

3)= 2,893,400,676원 × 법정상속분 2/9

4)= H은행 151,423,693원 + I은행 126,745,842원 + J은행 154,077,909원[= 152,640,949원 + 1,436,960원(= 1,283 달러 × 2012. 2. 6. 환율 1,120원)] + K은행 2,461,153,232원[= 2,457,537,872원 + 3,615,360원(= 3,228 달러 × 2012. 2. 6. 환율 1,120원)]